

광주지방법원 2024. 12. 6 선고 2024가단52735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C, D

피고E

변론 종결2024. 11. 8.

판결 선고2024. 12. 6.

주 문

- 피고와 F(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3. 4. 21.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 피고는 F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영광등기소 2023. 4. 24. 접수 제624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F은 1993. 6. 28.경 원고와 사이에 신용카드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 오다가 2023. 8. 28.부터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나. 원고는 F을 상대로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23차전139085), 위 법원은 2023. 10. 13.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F의 미지급 신용카드 이용대금(원금, 이자, 수수료, 연체료 등)은 2024. 4. 25. 기준 합계 12,814,379원이다.

라. F은 2023. 4. 21. 자신의 어머니인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영광등기소 2023. 4. 24. 접수 제6241호로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할 당시 F은 이미 원고와 사이에 신용카드 가입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었고,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5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갑 제5,6호증의(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사단법인 G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F의 재산상태 등을 더하여 볼 때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원고의 F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F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피고의 악의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2023. 4. 21. 당시 F의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인천 연수구 H 아파트 I호가 있었던 사실, 위 아파트의 가액이 540,000,000원이고, 위 아파트에 관하여 채무자 주식회사 J,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K으로 된 4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그 채권최고액의 합계가 782,4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F 소유의 위 아파트는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분은 F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는데,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합계가 위 아파트의 가액을 초과하므로 위 아파트를 F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할 수 없다.

결국 F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F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F의 아버지이자 자신의 배우자인 L과 자신의 소유였으나 형식적으로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두었던 것으로, L이 사망한 이상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자신의 소유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피고와 F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F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한종환

별지